



### 위원회 소식

4월 2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국가인권기구 활동 사항 제출을 요청하여 5월 5일 위원회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하였다. 5월 14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국가인권기구 활동 모음집을 송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위원회 활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연번	관련된 권리	관련 자료 및 활동	담당 부서
1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관련 상황 등	과도한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원장 성명서 손목밴드 도입 논의 등 과도한 자유권 훼손에 대한 위원장 성명서	인권정책과
2	사회 취약계층(구금자, 이주민, 난민, 자영업자 등)에 제공되는 내역	노동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사회인권과
3		구금자·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대응 모니터링, 관련 진정사건 조사 등	인권침해과
4		이주민 차별 금지 위원장 성명서	
5	식량권, 노동권, 사회보장 관련 상황	취약계층 식량권 등 모니터링	강원사무소
6		사회보장 관련 정책 모니터링	사회인권과
7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관련 상황	차별 관련 진정 사건 접수 현황 및 진행 상황	차별시정총괄과
8		혐오차별 근절 온라인 캠페인 실시, 협력 사업 진행, 모니터링	혐오차별대응팀
9		혐오차별 근절 위원장 성명서	
10		소수 국적자 거주 지역 위원장 방문 보도자료	
11		농인 정보접근권, 언어권 보장 위원장 성명서	장애차별1과
12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 관련 위원장 성명서	장애차별2과
13	젠더 측면	여성 노동자 집단근무지(콜센터) 환경 실태조사 추진 계획	성차별시정팀

## 유엔 소식 (COVID-19)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인권기구 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주요제안서 (Aide Memoire) 발간

4월 2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대응에 관한 주요제안서를 발표했다.

주요제안서와 함께 발표된 서한에서 미셸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최고대표는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용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염병 대응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정부, 인권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의 보건 당국이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문을 포함한 국가별 계획을 수립했다. 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국가별 계획에 자신의 임무와 활동을 통합시켜 인권옹호활동, 모니터링, 조사, 진정처리, 법률자문, 정부에 대한 조언, 인권운동가에 대한 지원 등의 형태로 위기대응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제안서는 전염병의 대비와 대응방안을 나누어서 이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전염병 대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는 증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대중에 전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보건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보건정책이 인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전염병 대비 및 대응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전염병 대응방안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국제규범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격리조치와 관련한 제재를 가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도소, 구금시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방지를 위해 일부 수용자를 석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http://www.ohchr.org/Documents/Press/HCCOVID19lettertoNHRIs/pdf>

## 유엔 소식 (hate speech)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6가지 혐오 표현 판단기준 한국어 번역본 배포

5월 1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혐오 및 폭력 조장에 관한 특정 발언을 차별, 적의, 폭력을 조장하는 수준의 범법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6가지 기준을 요약하여 32개국 언어로 번역·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혐오표현 판단 기준은 2012년 채택한 라바트 이행계획(Rabat Plan of Action)에 포함된 것이다. 라바트 이행계획은 표현의 자유와 폭력의 조장의 급지가 충돌할 때 국가, 언론, 기업,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라바트 계획은 맥락, 화자, 의도, 내용 및 양식, 발언행위의 파급 수준, 즉각성을 포함한 가능성이라는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발언이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정되려면 이 여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 발생 이후 나타난 “혐오의 쓰나미”에 관한 성명에서 “언론, 특히 소셜미디어 기업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종주의, 여성혐오, 그 밖의 유해한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라바트 이행계획에 제시된 여섯 가지 기준은 복잡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고 트위터, 유튜브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특정 게시글이나 이미지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 양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실제” 선동 사건이 기소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비판자들이 “혐오 선동가”로 기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바트 이행계획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차별, 적대감, 폭력의 조장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조약국장인 이브라힘 살라마 (Ibrahim Salama)가 예측했다.

붙임: 라바트 이행계획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Hate-speech-threshold-test.aspx>

## 인권 NGO 소식

### 휴먼라이츠워치: 구금아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 배제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여러 국가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있어서 구금 아동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교도소와 같은 폐쇄된 시설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단지 20개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억제를 위해 아동들을 구금시설에서 석방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언론보도 분석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 발생 이후 적어도 79개 국가에서 성인 구금자들을 석방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금 아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여러 정부들이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차후에 고려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조 베커(Jo Becker) 휴먼라이츠워치 아동권리옹호 국장이 지적했다. “정부는 구금 시설에 있는 아동의 수를 크게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금상태에 있는 자들은 높은 근접성과 기저질환의 높은 발병률로 인해 특히 감염에 취약하다. 교도소에서는 물, 위생시설, 기본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많은 국가의 교도소는 심각한 과밀상태이다.

2020년 3월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구금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창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금시설에 도입된 제한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시설에서 가족과의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아동을 감방에 하루 23시간 이상 감금시키고 있다. 이는 독방 감금과 마찬가지로 유엔 전문가들은 아동에 대한 독방 감금을 금지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당국이 사회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안전의 위협이 되지 않는 구금 상태의 아동들을 석방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https://www.hrw.org/news/2020/05/14/detained-children-left-out-covid-19-response>

※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관련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지침 등 총 15종을 번역·보급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국제인권>국제인권동향>코로나19 관련 국제인권규범모음집)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